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120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스마트팜 조성 및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스마트팜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
나.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다. 스마트팜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라. 장 제목 정비(안 제2장, 제4장)

마. 해당 조례 정의된 용어로 조항명 정비(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2)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9. 4.~9. 24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개선 권고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[부패영향평가결과]

관계 법령	-
개선의견	‘보조금의 신청·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’는 내용을 “보조금의 신청·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”라고 수정 반영 권고
새마포담당관 의견	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팜을 정의하고, 스마트팜 조성 근거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스마트팜”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마포구 도시농업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도시농업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”을 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“마포구”를 “구”로, “내지”를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도시텃밭의 조성 및 관리”를 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도시농업 용지의 조성)”을 “(도시텃밭 등의 조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마포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19조 앞의 “제5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스마트팜의 조성 등)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·관리하는 유휴부지, 유휴공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부지,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작물재배실 및 체험장에서의 작물 재배
2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3.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작물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
4.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8조(중전의 제17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5호 및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스마트팜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
6.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

② 보조금의 신청·교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(중전의 제18조)제1항 중 “도시농업관련”을 “도시농업 관련”으로, “용

지”를 “도시텃밭 등”으로 한다.

중전의 제19조와 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“스마트팜”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.</u>
제3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<u>마포구 도시농업</u>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제2장 <u>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</u>	제3조(기본원칙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도시농업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장 <u>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</u>
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(생략) 2. <u>마포구</u> 소속 4급 <u>내지</u> 5급 공무원 3명 이내 3. ~ 5. (생략) ④·⑤ (생략) 제4장 <u>도시텃밭의 조성 및 관리</u>	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구</u> ----- <u>또는</u>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4장 <u>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</u>

제12조(도시농업 용지의 조성)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휴지, 자투리땅, 공원·녹지,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(도시텃밭 등의 조성) -----

구 -----

--.

제14조(스마트팜의 조성 등)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·관리하는 유휴부지, 유휴공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부지,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작물재배실 및 체험장에서의 작물 재배
2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3.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 작물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
4.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

제14조 ~ 제16조 (생 략)

제17조(보조금의 지원) 구청장은 도
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
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
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
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5. (생 략)

<신 설>

제18조(공동사업 관리) ① 구청장은
조례에 따라 설치·구성된 도시농
업관련 시설 및 용지의 운영과 효
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에는 유관기관, 환경단체 및

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
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
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 ~ 제17조 (현행 제14조부터
제16조까지와 같음)

제18조(보조금의 지원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스마트팜 교육·체험 프로그램
운영 사업

6.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
관련 행사 개최

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보조금의 신청·교부 등에 관하
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
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9조(공동사업 관리) ① -----

----- 도시
농업 관련 ----- 도시텃밭 등----

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5장 보칙

제19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스마트팜에서의 작물 재배 및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 소요

제14조(스마트팜의 조성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 ※ 스마트팜 개소 수 및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

스마트팜 상주, 관리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, 스마트팜 전기, 수도 등 공공 운영비, 모종, 씨앗, 양액 등 작물재배관련 비용 및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세입						
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구비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	○						
	소계(b)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□ 총 비용(a-b)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의존						
	재원						
	소계						
	시비보조금						
자체	지방교부세						
	수입						
	소계						
	지방세수입						
민간	세외수입 등						
	지방채						
	민간자본						
	기타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합계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스마트팜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속에서 미래 농업으로 다음세대 어린이, 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스마트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으며, 스마트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①자체관리인력 양성, ②농업용전기 협의 ③모종보다 육묘 재배 원칙으로 운영

Ⅱ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편성목	통계목	내역	예산액(천원)
인건비	기간제 근로자등보수	◦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	67,987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◦ 교육체험프로그램 용역비 ◦ 홍보물 및 교육운영관련 소모품 등	34,000
	공공운영비	◦ 공공요금(수도, 전기 통신 등) ※ 농업용 전기 적용 기준	42,000
	행사운영비	◦ 스마트팜 홍보 행사	5,000
재료비	재료비	◦ 배양액 및 종자, 모종 등 구입비	15,000
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	◦ 스마트팜시설 유지·보수비	12,000
합 계			175,987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윤선영
연 락 처	02-3153-8592